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지침

1995. 9. 1	제 정
1995. 11. 25	1차개정
1996. 5. 2	2차개정
1996. 10. 16	3차개정
1997. 5. 6	4차개정
1997. 9. 5	5차개정
1998. 6. 30	6차개정
2001. 8. 31	7차개정
2008. 4. 7	8차개정

1. 건설기계의 등록 및 검사

가. 신규등록

① 시·도지사는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신규등록(등록말소 후 재등록하는 경우 제외)시에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필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형식승인을 필한 중고건설기계와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법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와 확인검사를 받은 제작자 등이 이와 동일형식으로 제작 등을 한 건설기계는 제외)에 대하여는 신규등록 검사를 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의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건설기계제작증, 수입신고필증 등)상의 제작자 및 수입자(납세의무자)로부터 건설기계를 직접 구매한 증명서류 등을 말한다. 수입건설기계의 제작년월일 표기는 수입신고필증의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며, 중고수입 건설기계는 제작년도의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된 건설기계는 재등록할 수 없다.

④ 시도지사는 신규등록검사가 면제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차대일련번호 압형을 검사대행자에게 송부하여 차대일련번호를 이미지(Image) 형태로 전산관리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영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 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합격증을 확인하고, 신규등록 절차에 따라 관련서류[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타워크레인 제작증, 건설기계제원표(작업장치 포함) 등]을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기계 민원행정 종합정보시스템에 타워크레인의 제원표 내용을 입력하고 형식승인번호를 부여하여 제3제원으로 등록관리 하여야 한다.

나. 신규등록검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규정한 신규등록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의 구비서류 중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사본”이라 함은 등록관청에 접수한 등록신청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다. 정기검사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검사 최고한 기간내에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직권말소처리 지연으로 말소처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를 받도록 계속해서 검사최고 등을 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기준규칙”이라 한다) 시행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로서 2008년 5월 1일 전까지 등록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개정전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576호, 2007.8.17) 별표 6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라. 등록번호표의 관리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반납 받은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번호표를 반납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정지기간 경과 시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마.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규격, 재질 및 표시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2와 같다. 다만, 영업용번호표의 “영” 자의 원둘레 두께는 필요시 5mm로 할 수 있다.

바. 구조변경

① 시행규칙 제42조제7호 단서규정 중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치를 선택 부착하는 경우”라 함은 용접 등에 의한 영구 고정 부착 방식이 아닌 볼트·너트 등에 의하여 간단하게 탈·부착이 가능한 작업장치를 선택 부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 기종의 건설기계의 작업장치를 선택 부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검사대행자는 굴삭기 버킷 등의 연결장치(커플러)가 안전기준규칙 제162조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부착한 굴삭기에 대하여는 구조변경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원 경락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변경하고자할 경우에는 경락대금이 완납되는 날이 영 제5조에 의한 소유권 변경 일이 되므로 이날을

기준으로 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록관청에서는 소유권 이전에 따라 대여업체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 내용을 변경 전 대여업체 대표자에게 통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경락건설기계를 수출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락대금완납증명서 또는 법원에서 발행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수출신용장 등 당해 건설기계가 수출될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기계 소유권 이전등록 조치 후 등록말소를 하여야 한다.

아. 등록말소의 확인

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4호의 “멸실·도난·수출·반품 및 교육·연구목적 사용” 등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제5호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이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지정하거나 설립된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건설기계 제작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1) 멸실 : 당해 건설기계가 멸실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서 등
- 2) 도난 :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 접수확인원 (도난 당한 때에 한한다)
- 3) 수출 :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신용장 등 수출 관련서류
- 4) 반품 : 건설기계제작사(수입사) 등에서 제작결함 등으로 반품을 결정하거나 반품한 관련서류
- 5) 교육·연구목적 :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교육용 및 연구용으로 분류하거나 지정한 관련서류

6) 기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다만, 가목 및 사목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나) 건설기계의 차대가 등록시의 차대와 다른 때

다) 건설기계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라)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마) 건설기계가 멸실된 때

바)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때

사) 건설기계를 폐기한 때

아) 구조적 제작결함 등으로 건설기계를 제작·판매자에게 반품한 때

자) 건설기계를 교육·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때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은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법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말소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제3항에서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라 함은 수출을 위한 등록말소 당시의 소유자로서 등록말소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이행여부신고의 최종의무자는 등록말소 당시의 소유자이나, 해당 건설기계가 수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는 수출신고필증(사본) 등의 증명서류를 첨부하는 경우는 수출업자 등이 신고할 수 있다.

자. 콘크리트믹서트럭 폐콘크리트 및 폐수 수거장치

안전기준규칙 제61조 및 시행규칙 제27조 별표 8중 5.작업장치 자. 콘크리트기계류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수거장치에는 폐콘크리트 및 폐수를 수거할 수 있는 수거통(20리터 이상)도 이에 포함된다. 다만, 수거통의 경우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주행시 이탈되지 않도록 부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교부 및 열람

① 건설기계 등록원부의 교부 및 열람 신청은 별지 제16호의2 서식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교부할 수 있으며, 저당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변경전 소유자(저당권설정시의 소유자)에 대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게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할 경우에는 그 용도를 매매알선용, 조세부과용, 신용조사용 등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를 표기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기계 소유자가 주민등록번호 표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표기한다.

③ 시·도지사는 건설기계 등록원부의 교부 및 열람 신청자에게 전산 조직에 의거 등록지내의 기관 및 타 시·도의 기관에 등록된 건설기계의 등록원부(등·초본)에 대하여 열람 또는 교부를 할 수 있다.

④ 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 받은 자는 등록원부상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의 유출 등으로 건설기계소유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기계사업

가. 공동건설기계주기장

다수의 건설기계사업자(일반,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모두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주기장을 확보한 경우에는 각 사업자가 주기장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때의 소요면적은 각 사업자가 보유한 건설 기계의 총 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며, 2개이상의 장소에 주기장을 확보한 경우에는 각각의 주기장 면적에 따라 주기대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나. 사무실·주기장의 전대 및 사용대차

건설기계사업을 위한 사무실 및 주기장 사용계약서상에 당해 임차인과 임대인이 제3자에게 전대 및 사용대차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민법」 제609조 내지 제654조 규정에 의하여 그 사무실 및 주기장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건설기계 대여업 및 매매업 등록기준의 “사무실”이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대상에 등재되거나 「건축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서 사무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다. 건설기계의 소유사실의 증명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건설기계의 매매계약서,

건설기계의 증여 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

라. 건설기계대여업 지점의 시설확보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소재지를 달리하는 장소에 새로이 사무소(지점)를 설치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을 확보한 후 그 사무소(지점)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마. 매매업자가 보유한 건설기계의 등록제한 등

건설기계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보유한 사업용 건설기계로서 사업장에 제시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사업용 건설기계 등록제한대상에서 제외한다.

3.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 등

가. 수입건설기계의 동일형식신고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중 “이미 형식승인을 얻은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당초 형식승인을 얻은 수입자와 별도로(통관서류상 수입자와 무역대리점과의 관계를 맺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나. 건설기계형식신고

① 시행규칙 제44조의2에 의한 건설기계형식신고시 제원표의 기재사항을 입증하는 자료에는 당해 건설기계제작사가 발행한 카다로그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의2에 규정에 의하여 형식신고한 건

설기계와 외국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는 매 대수마다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후 등록·사용하여야 한다.

다. 확인검사 결과의 조치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하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라 한다)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이하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이 확인검사결과를 조치하는 요령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 ① 확인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 시·도지사, 검사대행자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다. 다만,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확인검사결과 안전기준규칙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합 조치하고 신청인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다.
- ③ 승인(신고)된 제원과 상이하나 안전기준규칙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및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이 검사결과대로 제원을 정정하고 신청인과 시·도지사, 검사대행자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다. 다만,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신규검사 결과의 조치

시행규칙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신고한 건설기계의 신규등록검사를 실시한 검사대행자는 당해 건설기계가 건설기계제원표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불합격 조치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다만, 신고된 제원과 상이하나 안전기준규칙에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가 검사결과대로 제원을 정정한 후 합격처리 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 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가. 면허증의 규격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시행규칙 제71조제2항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다만, 면허증을 새로이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의 규격(82mm x 52mm)과 같이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주소변경이 있는 경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주소도 변경신고 하여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나. 면허 추가시 기재요령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소지면허」란에 새로이 추가된 「면허의 종류(면허취득일)」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 본인희망에 따른 면허 취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에 대하여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본인희망) 신청서를 제출하면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80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면허 취소사항을 기재하고, 면허증은 반납 받아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5. 시행일 등

가. 이 지침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시달된 건설기계관리업무와 관련한 지시·지침은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 것으로 본다.

